

발 간 등 록 번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령집

2013. 9.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목 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8751호, 2007.12.21 제정]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855호, 2008.6.20 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2008.6.2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2013.3.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6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6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6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10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10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8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12	제4조(개선명령) 12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12
		제5조(안전·위생교육) 1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16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16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14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16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16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17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17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17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20	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 20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21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21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 21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3	제12조 삭제 <2011.8.30> 22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23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25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25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26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 발급절차)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27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 27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29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절차 등) 29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32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32
제18조 삭제 <2009.5.27> 32		
제19조(인증의 취소) 32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33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 35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35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등) 3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23조(세계 및 금융지원 등) 39</p> <p>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40</p> <p>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40</p>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43</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 칙</p> <p>제27조(벌칙) 48</p> <p>제28조(과태료) 48</p> <p>부 칙 51</p>	<p>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40</p> <p>제14조(권한의 위탁) 43</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 48</p> <p>부 칙 51</p>	<p>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40</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43</p> <p>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45</p> <p>부 칙 51</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령집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8751호, 2007.12.21 제정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09.5.27> 3. 삭제 <2009.5.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0855호, 2008.6.20 제정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2008.6.2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2013.3.24.,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p> <p>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p> <p>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p> <p>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 조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p> <p>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p> <p>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p> <p>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p> <p>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p> <p>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p>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6.12]</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p> <p>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p>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p>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p>	<p>(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p>	<p>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p> <p>4.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p> <p>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p> <p>나. 운영자금 조달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p>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p>	<p>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p>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 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p>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p>제5조(안전·위생교육) ① 법 제7조제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p> <p>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 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p> <p>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p> <p>② 시장·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 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중간에 등급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등급변경결정을 한 사업에 대하여는 2년마다 하는 정기적 등급결정 시 다시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방향과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활동 지침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심의에 필요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등급결정기관이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는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시기,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과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개정 2013.3.24></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p> <p>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p>	<p>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p>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p>	<p>[본조신설 2012.12.13]</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p>	<p>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p>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p>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는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p> <p>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구분과 사업별 부문에 따라 해당 부문별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p> <p>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마을의 경관, 주변 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농어촌생활 체험 부문: 체험 관련 시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p> <p>다.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라.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 부문: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관광농원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관광농원의 경관, 주변 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농어촌생활 체험 부문: 체험 관련 시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p> <p>다.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라. 음식 부문: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3. 농어촌민박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민박시설 주변의 경관·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③ 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24></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p>제8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본조신설 2012.12.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p> <p>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p>	<p>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p> <p>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p>	<p>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p> <p>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p> <p>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p> <p>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p> <p>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p> <p>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p> <p>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p> <p>제12조 삭제 <2011.8.30></p>	<p>추진 실적</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3.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성과 4. 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향상 노력의 정도 <p>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 호 또는 제2항제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p>		<p>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평가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12.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9></p>	<p>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p>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p> <p>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p>	<p>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p>	<p>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 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 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 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 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 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 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 류(체험·봉사)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 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 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 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 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 	<p>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발 및 운영</p> <p>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p> <p>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p> <p>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p> <p>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p>		<p>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p> <p>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p>		<p>1. 교육시설 현황 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p> <p>⑥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17, 2012.12.13></p> <p>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p> <p>⑧ 시·도지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개정 2012.12.13></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7, 2012.</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8조 삭제 <2009.5.27></p> <p>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 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p>		<p>12.13></p> <p>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개정 2013.3.24></p> <p>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13></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p> <p>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27, 2013.3.23></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p> <p>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p>		<p>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 3.24></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과 능력이 있을 것</p> <p>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p> <p>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p> <p>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p> <p>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p> <p>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p> <p>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p> <p>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p> <p>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p> <p>3. 사업계획서</p> <p>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p> <p>1. 대표자</p> <p>2. 기관·단체의 명칭</p> <p>3.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p>		<p>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p> <p>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p> <p>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p> <p>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p>	<p>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p>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p>		<p>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p>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p>	<p>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3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p>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p> <p>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3.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성과 4. 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향상 노력의 정도 <p>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6.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2항제 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 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 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p>③ 삭제 <2013.3.23></p> <p>④ 삭제 <2013.3.23></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p>	<p>다) 제14조제1항제 호 또는 제2항제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평가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3]</p> <p>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p> <p>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2.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사업</p> <p>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구분과 사업별 부문에 따라 해당 부문별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p> <p>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마을의 경관, 주변 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농어촌생활 체험 부문: 체험 관련 시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p> <p>다.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라.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 부문: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2. 관광농원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관광농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 경관, 주변 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농어촌생활 체험 부문: 체험 관련 시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p> <p>다.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라. 음식 부문: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3. 농어촌민박사업</p> <p>가. 경관 및 서비스 부문: 민박시설 주변의 경관·환경 및 서비스 수준</p> <p>나. 숙박 부문: 숙박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p> <p>③ 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본조신설 2012.12.13]</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 칙</p>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 	<p>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p> <p>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p> <p>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p> <p>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 <신설 2011.3.29></p> <p>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p> <p>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 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p> <p>⑥ 삭제 <2009.5.27></p> <p>⑦ 삭제 <2009.5.27></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p> <p>⑧ 부터 ④⑤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제10386호, 2010.7.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p>	<p>부 칙 <제20855호, 2008.6.20></p> <p>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 생략 . . .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p> <p>⑯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p>	<p>부 칙 <제14호, 2008.6.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77호, 2009.8.17></p> <p>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08호, 2011.9.30></p> <p>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26호, 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 칙 <제10479호, 2011.3.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p>	<p>한다.</p> <p>⑰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 칙 <제21847호, 2009.11.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⑫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27호, 2012.12.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4호, 2013.3.2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제11455호, 2012.6.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23108호, 2011.8.30></p> <p>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p> <p>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제11699호, 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1877호, 2013.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p> <p>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p> <p>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p> <p>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p> <p>㉓부터 ㉖까지 생략</p>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1.8.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5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20만원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	30만원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 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2호	50만원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어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어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어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어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어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어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어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어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어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어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어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표 2] <개정 2011.9.30>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도농교류 관련법령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2) 마을경영	
	3) 지역자원발굴·활용	
	4) 홍보·마케팅	
	5)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나.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10시간 이상
	2)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3)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4)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5) 지역사회 파트너쉽 형성	
	6)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7) 혁신과 리더쉽	
	8)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9)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춘 것
나.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다.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라. 안전교육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춘 것
나. 마을해설기법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사업자(마을명)	
	마을소재지	전화번호
	마을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 [백상지 80g/㎡]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2.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1. 사업자(마을명) :
2. 사업자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대표자) :
5. 주소(대표자) :
6. 사업개요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20g/㎡]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지정 또는 변경지정란	사업자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지정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	-------------

유의사항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 판매 ·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

1. 사업자(마을명) :
2. 사업소재지 :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대표자) :
5. 주소(대표자) :
6. 사업개요(변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도농교류(기부)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처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내용	현금	현물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 영수증

[210mm×297mm(백상지 80g/m²)]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발급번호 : 년 - 호

기부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처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 내용	현금	현물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11>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상

발급연도 : 년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내용								
일련 번호	날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교류확인 내용			발급 내용	
		기부자 또는 체험·봉사자 주소		기부 금액	체험· 봉사 활동시간	확 인 자	발급 번호	발급 일
기부처 또는 체험·봉사활동 장소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체험봉사 활동 장소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소재지		
신청 내용	활동 기간		비 고
	활동 시간		
	활동 횟수		
	활동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마을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대표 귀하
○○관광농원사업자대표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11>

도농 교류(체험·봉사)확인서

발급번호 : 년 - 호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자	마을·대표자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비 고
	활동 시간		
	활동 횟수		
	활동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대표
○○관광농원사업자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0g/㎡)]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3>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신청인(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	계	강 의	실 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강사자격			
	평가방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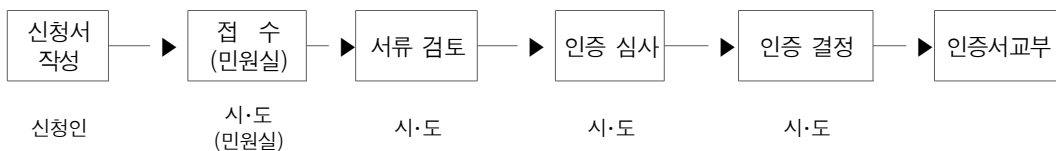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13>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신청인(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분야 (√ 로 표시)	[] 농어촌체험지도사 [] 농어촌마을해설가						
기본교육의 내용	기본교육 내용	강사	교육교재	교육시간			
			교재명 발행처·저자	계 강의 실습			
교육과정 내용	프로그램 명칭	제공기관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계 강의 실습	시간	강사 구성
교육시설 현황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강 의 실				m ²		
	실 습 장				m ²		
	사 무 실				m ²		
	화 장 실				칸		
	건 물	[] 신 축 [] 개 조	[] 구조변경				
소유 관계	[] 자 가 [] 임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강사 인적사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주요 경력	소지 자격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교육시설 현황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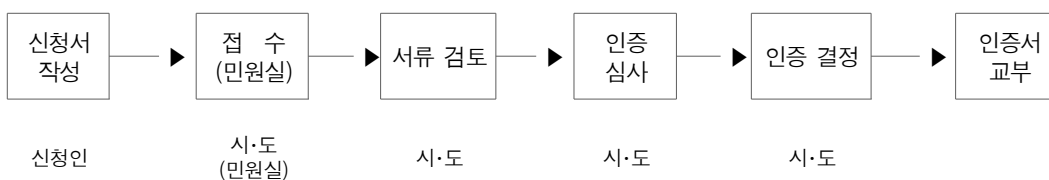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인 증 서

1. 인증번호 :
2.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3. 인증분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4. 유효기간 : 20 . . . ~ 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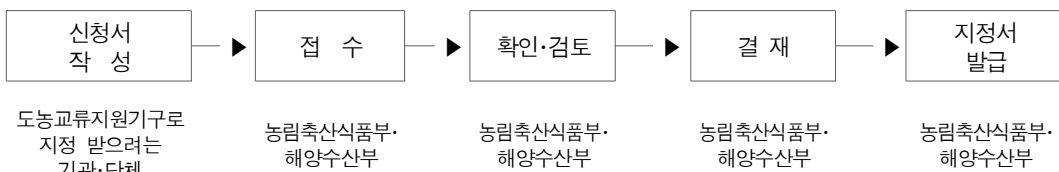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 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1. 기관·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3. 소 재 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직인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

1. 기관·단체명 :
2. 법인등록번호 :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 :
5. 소 재 지 :
6. 사업내용(변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홍보·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14호 (2013. 3. 18)]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제2013-1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구성순서	세 부 항 목
(1)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3)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타)진행과정과 (타)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4) 진행 과정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 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교육과목 및 시간	주요 교육내용	필수 교육시간
(1)도농교류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도농교류의 개념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알아야 할 관계법령으로 구성 	5시간 이상
(2)마을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경영의 이해, 마을경영 자원의 유형별 관리, 마을경영사례, 마을지도자의 자질진단과 역할(리더십)실습, 소득분배, 마을주민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법인경영체 구성과 운영, 농특산물 가공업,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 조직운영 등으로 구성 	20시간 이상
(3)지역자원 발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자원의 의의 및 유형과 활용방안, 농어촌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방법, 자원활용 사례, 마을 자원의 차별화 전략, 마을자원지도 만들기 등 지역 자원 발굴·활용 등으로 구성 	20시간 이상
(4)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홍보 개념,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 마을 홍보 및 마케팅 홍보자료 만들기, 마케팅 등으로 구성 	20시간 이상
(5)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내용 등으로 구성 	-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구성순서	세 부 항 목
(1)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3)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4) 진행과정과 (5)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4) 진행 과정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 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교육과목 및 시간	주요 교육내용	필 수 교육시간
(1)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공간 구조의 특성 이해,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 선진국 농어촌과의 비교,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구성	8시간 이상
(2)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 농어촌지역개발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예산 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3)농어촌지역자원의 가치 창출	○ 농어촌 지역자원의 개념, 자원의 유형별 활용 방안, 경관의 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8시간 이상
(4)농어촌지역 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수립 방법, 지역 개발계획 수립절차, 지역내 활동주체 조직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6시간 이상
(5)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갈등관리,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6)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 지역경영 전략, 지역의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7)혁신과 리더십	○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8시간 이상
(8)농어촌지역 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 현장견학 및 실습,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구성	10시간 이상
(5)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 (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 과 목	교육 내 용	교육시간
1단계	(가) 주제별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 및 프로그램의 이해 ○ 체험프로그램의 주제별 분류 및 특성 ○ 주제별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이론 ○ 기획·운영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 ○ 사전·사후 평가 등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나) 농어촌체험 지도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지도의 필요성과 지도사의 역할 ○ 농어촌체험지도기법과 특징 ○ 체험프로그램 진행기법 및 실습 ○ 집단활동, 관계형성 훈련, 집단게임 ○ 진행리더십, 레크레이션 기법,유머기법 등 기타 	
2단계	(다) 농어촌체험 교육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개발의 필요성 및 구성요소 ○ 교재(교구)개발의 절차 ○ 교재(교구)의 사례분석 및 만들기 ○ 교재(교구) 활용방안 등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라)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의 안전지도 ○ 농어촌체험시설에 대한 안전 기본지식 및 내용 등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방법 ○ 응급처치 이론과 실기 등 기타 	
3단계	(마)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농어촌체험 지도계획 및 실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지도 계획서 작성 ○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체험교재(교구) 만들기 및 지도 ○ 안전교육, 야외활동 지도 ○ 체험지도 결과 평가와 환류 등기타 	30시간 이상 (현장학습 4일이상)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
 -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자격기준
(1)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1.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	2.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체험 관련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3. 레크리에이션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경력이 있는 자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4) 안전교육	1. 의사, 간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 대한적십자사, 119구조대 등 구호, 재난 안전관련 공공 기관 재직자 3.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1.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체험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레크리에이션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능력이 있는 자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 (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 과 목	교육 내 용	교육시간
1단계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에 담긴 사상과 개념 ○ 농어촌마을의 형성 및 기능 ○ 농어촌마을과 생활 탐구 ○ 농어촌마을의 자원 및 특성 ○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나)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문화현상 ○ 농어촌지역의 전통문화 탐구 ○ 문화해설의 이해 ○ 농어업과 생활, 놀이, 축제 등을 활용한 마을해설 ○ 기타 	
2단계	(라) 마을해설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해설의 목적 및 해설가의 역할 ○ 마을해설의 체계와 다양한 기법 ○ 해설관련 자료수집 및 전략수립, 해설자료 제작 등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 진행리더십, 유머기법 ○ 기타 	30시간 이상 (이론75%, 실습25%)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해설의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화 ○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 마을해설 프로그램개발 및 실습(도구 포함) ○ 결과 평가 등 ○ 기타 	
3단계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농어촌 마을해설계획 및 실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해설계획서 작성 ○ 마을해설의 진행 ○ 해설참여 고객의 평가 ○ 해설이 있는 마을 탐방 	30시간 이상 (현장학습 4일이상)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어야 함
-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기준
(가)농어촌마을의 이해	1.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농어촌전통문화 해설	2.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마을해설기법	4. 마을해설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